#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58

발의연월일: 2024. 11. 21.

발 의 자:서영교·황정아·이용우

한민수 · 김교흥 · 김남근

김영환 · 정동영 · 정준호

조계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상황임.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철저히 청산하고,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존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 특례법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완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법률 제 호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종사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 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를 배제하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 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인권적 국가범죄 적용대상) 이 법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 1. 공무원(「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의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 2.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의 죄를 통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
  - 3.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통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제3조(공소시효의 배제) 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 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 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 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소시효 특례의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3조(소멸시효 특례의 소급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